

2026년 화성산업진흥원-수원대학교 「WoW! Makers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예비창업자 · 스타트업 모집 공고

수원대학교 WoW! Makers와 화성산업진흥원(HIPA)에서는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의 제품화를 지원하고, 우수 예비창업자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WoW! Makers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을 시행합니다. 관내 예비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6. 4.

(재)화성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WoW! Makers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4.~12.
- 지원대상: 예비 창업자 및 화성시 소재 업력 3년 이내의 스타트업
- 지원내용: 제품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드웨어기반
시제품 제작의 재료비, 가공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규모: 총 10개사, 기업당 최대 5,000천원(공급가액) 지원
- 지원항목

비목	운영기관	세부내용
재료비 (현금지원)	화성산업 진흥원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 ※ 양산용 재료 및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료 사용 불가
위탁사업비 (현금지원)		· 과제(시제품 제작)와 직접 관련이 있는 외부 위탁비용(외주계획서 必) · 시제품 디자인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설계비용 등
회계정산 및 제세공과금 (현금지원)		· 회계정산 수수료 (※ 본 사업에서는 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 진행하는 사업비 회계 감사에 대한 수행 비용임)
시제품 설계 컨설팅 (멘토링)	수원 대학교	· 제품외형/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디자인에 대한 기술지원 · 제품설계부터 시작하여 워킹 목업(Mock-up)까지 기술 지원 ※ 멘토링은 WoW! Makers 전문가 List에 속한 전문가와 1:1 매칭 예정
시제품 제작 (장비지원)		· 최종 설계를 바탕으로 제품 가공 지원 ※ 제작과정에 필요한 제품 제작 장비를 지원[참조7]

※ 기 양산 및 판매 제품 지원 불가

※ 비목에 대한 계상기준 및 필요 증빙자료는 화성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2

추진 일정

구 분	주 요 활 동	일 정
*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 모집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	4월
▼		
* 평가 및 최종 선정	-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서류 발표평가	4~5월
▼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사업계획 보완 내역 확인 후 진흥원-선정기업 협약 체결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확인 후 지원금 지급	5~6월
▼		
* 멘토링 및 제작, 개발	- (수원대) 구현방안 및 기술 검토 멘토링 진행 - (선정기업) 시제품 제작 및 개발	6~10월
▼		
* 중간 점검	- 사업 운영 점검(서면 진행)	9월
▼		
* 정산 및 성과물 관리 * 사업 결과보고	-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결과 검토 및 보고	11월
▼		
* 성과공유회 개최	- 우수사례 공유 및 우수제품 전시	11월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3

모집 개요

□ 모집기간: 2026. 4. 1.(월) ~ 4. 17.(금) 18:00까지

□ 지원자격

① 예비창업자

-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내 사업자등록 필수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없는 자
- 단, 사업 공고 전일까지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을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기업)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이종·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함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이종업종으로 판단)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 경제분류 - 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자료실 - 최신개정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② 창업자: 기준 충족한 기업 중 관내 소재* 기업

구분	자격 세부내용								
공통기준	<p>접수일(26.4.1.)로부터 업력 3년 이내(23.4.1. 이후 설립)의 개인 또는 법인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소지한 경우, [참조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장 제2조(창업의 범위)>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p>※ 근거: [참조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장 제2조, [참조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장 제3조</p>								
관내 소재기업 인정범위	<table border="1"> <tr> <td>① 화성시 내 본사가 위치한 기업</td> <td></td> </tr> <tr> <td>② 화성시 내 공장이 위치한 기업</td> <td>-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만 가능</td> </tr> <tr> <td>③ 화성시 내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td> <td>-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만 가능</td> </tr> <tr> <td>④ 화성시로 이전 예정인 기업 ※ 신청서 등록 시 【별첨1】이전예정기업 확약서 함께 제출 必</td> <td>-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만 가능 - 공장/연구소 이전인 경우도 인정</td> </tr> </table>	① 화성시 내 본사가 위치한 기업		② 화성시 내 공장이 위치한 기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만 가능	③ 화성시 내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만 가능	④ 화성시로 이전 예정인 기업* ※ 신청서 등록 시 【별첨1】이전예정기업 확약서 함께 제출 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만 가능 - 공장/연구소 이전인 경우도 인정
① 화성시 내 본사가 위치한 기업									
② 화성시 내 공장이 위치한 기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만 가능								
③ 화성시 내 연구소가 위치한 기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만 가능								
④ 화성시로 이전 예정인 기업* ※ 신청서 등록 시 【별첨1】이전예정기업 확약서 함께 제출 必	- 단, 본사 설립일 기준 업력 3년 이내만 가능 - 공장/연구소 이전인 경우도 인정								
기타사항	- 관내 지점(지사) 등록기업 지원불가								

□ 지원 제외대상: 부적격 대상*이거나 중복수혜**로 판단되는 기업

* 부적격 대상

- 1) 신청서, 발표자료 등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4) 휴·폐업 혹은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5)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근거: [참조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6)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근거: [참조5] 창업기업 인정기준
- 7) 그 외 제재사항* 또는 기타 사유에 해당되어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 근거: [참조6] 창업기업 제재 및 환수사유
- 8)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예비창업자만 해당)

** 중복수혜 대상

- 1) 25년도 'WoW! Makers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에 참가하여 지원받은 자
- 2) 접수일 기준 동일 과제로 유사 목적의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
* 선정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유관기관 간 중복수혜 검토 후 중복해당 시 수혜 불가
- 3) 그 외 선정 이후에도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사항 발생 시 실패처리 또는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모집방법: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 기업지원플랫폼(<https://platform.hsbiz.or.kr>) 접속 → 회원가입 → 지원사업공고 → 공고문 확인 및 서식 다운로드 → 지원하기 → 제출서류 업로드

※ 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현장방문·전화·이메일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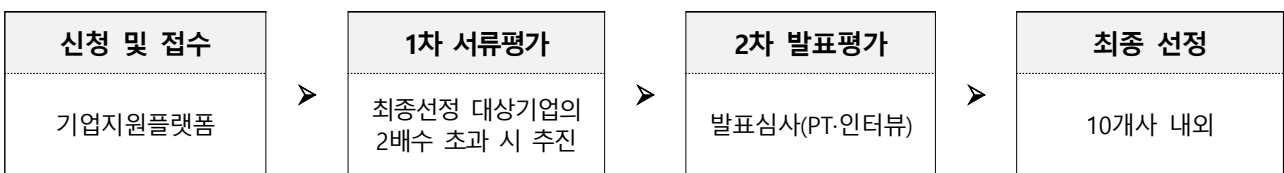
□ 접수 시 제출서류 * 적색 '●' 표시 필수제출 서류, 검은색 '●' 표시 선택(해당 사)제출 서류

구분	제출 항목	비고
작성 후 제출	● [서식 1] 사업 신청서	한글 또는 PDF 형식, 하나의 파일로 제출. ※ 서명, 날인 필수
	● [서식 2] 사업 계획서	
	● [서식 3] 사업비 사용계획서	
	● [서식 4] 위탁사업비 집행계획서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각 1부	(하나의 파일로) 2가지 모두 제출 ※ 예비창업자: [별첨2] 예비창업자 협약서 1부 제출
	● 국세 완납 증명서	공고게시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예비창업자: 신청자의 납세증명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설계도면	파일 양식 무방 (도면이 확인 가능한 이미지 파일도 제출 가능)
	● 창업기업확인서(창업진흥원 발급) 1부 ※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사실여부로 대체 가능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에 최대 10일까지 소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국세청 홈택스 통해 발급 가능
	● 공장등록증 1부	관외 본사를 둔 관내 공장 등록기업인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	관외 본사를 둔 관내 연구소 등록기업인 경우
● [별첨] 협약서(이전예정기업/ 예비창업자 별 구분)	관외 소재기업이 협약 후 1개월 내 화성지역으로 이전 예정인 경우 / 예비창업자가 협약 후 1개월 내 화성지역으로 사업자 등록 예정인 경우	

5 선정 및 평가

□ 선정 방식

○ 선정 절차



○ (서류평가) 선정 예정 기업의 2배수* 범위 내 선정

- ※ 「2025년 제3회 화성시 중소기업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서류 단계 자동 통과 후 발표심사 대상자로 선정됨.
- ※ 적격기업이 2배수가 넘으면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사업내용 평가 방식으로 진행 예정

- 평가일정: 2026. 4. 23.(목) 예정(사업 운영 상황상 변동 가능)

- 결과공고: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 '알림마당-공고' 게시판 공고 및 수원대학교 WoW! Makers 홈페이지 내 서류합격 여부와 발표평가 안내사항 공고

○ (발표평가) 최소 5인 이상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발표심사(PT) 및 활용계획 인터뷰 진행

- 평가일정: 2026. 5. 8.(금) 예정(서류 평가 결과공고 시 별도 안내)
- 발표시간: 기업당 총 15분(발표 및 질의) 내외 부여
- (2차)인터뷰: 발표심사 후 컨설팅담당자와 활용계획 인터뷰 진행 예정
- 결과공고: 평가 후 1주 내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 '알림마당-공고' 게시판 공고

○ 최종(협약대상) 선정

- (선정기준)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자 中 고득점순으로 선정, 동점일 경우 상위배점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결정
- 기술성 > 시장성 > 필요성 > 창업자의 역량 순 > 기타 해당사항

□ 평가지표

평가 항목		점수
기술성	· 기술 구체성 여부 · 기술의 구현 적정성 여부 · 기술의 파급성	30
시장성	· 시장진출 및 성과창출 가능성 여부	30
필요성	· 지원 기업 및 제품의 지원 필요성 · 본 사업목적과 신청 제품/기업과의 적합성	20
창업자의 역량	· 창업자의 사업 의지 및 기술지식 수준 · 창업자의 추진역량	20
(서류 가산점)	· 예비 창업자 또는 대학생 기업은 가산점 부여(1차 서류평가에 한함)	(10)
합 계		100

※ 가산점은 서류평가에만 유효

※ 서류, 발표 평가지표 동일(가산점 제외)

6

향후 일정 및 유의사항

□ 향후 일정

○ 협약체결: 최종 선정기업 협약체결

- 협약기간은 2026. 6. 1.~10. 31.(5개월) 체결 예정

○ 지원금 지급: 지원금 교부신청 절차 진행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창업자는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내사업자 등록 필수
- 사업화 지원금 최대 5,000천원(공급가액기준) 지급
- 사업화 지원금은 최대 100% 선지급 후 정산함

○ 중간 점검

- (점검기간) 2026. 9월 중(예정) ※ 서면 진행
- (점검내용) 사업 운영 점검을 통한 사업비 집행 내역 및 사업 진행률 확인

- 지원금 정산: 진흥원 지정 회계법인에 따른 정산
 - 외부 회계법인* 통해 정산 추진 및 승인금액 확정, 불인정금 및 미사용액은 환수됨
 - * 외부 회계법인 정산 위탁비용은 지원금 내 계상하여 정산 처리

○ 성과 발표회

- (개최일정) 2026. 11월 중순(예정)
- (주요내용) 기업별 시제품 제작 과정 및 결과 발표

□ 신청자 유의사항

유의사항

본 공고는 수원대학교 와우메이커스 내 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을 하는 사업으로
[참조기] 수원대학교 장비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에 요청에 의하여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출서류 외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참가자는 동 공고문 및 지침, 기타 진흥원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참가자에게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여 선정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선정결과 통보 또는 협약 이후 일방적 참가 취소 시 향후 유사 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참여기업은 향후 성과보고서, 결과물, 설문조사, 실적 제출 등 진흥원 요청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차후 화성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사업에 참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문의처

- 수원대학교 WoW! Makers(✉ makerspace@suwon.ac.kr, ☎ 031-229-8821)
- 화성산업진흥원 창업벤처팀(✉ jsnoh@hsbiz.or.kr, ☎ 031-377-1536)

*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요망

** 상기 공고내용은 사업운영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재]화성산업진흥원장

참조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2의2. “국외 창업”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 외국의 법률에 따라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의2. “국외 창업기업”이란 국외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5.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창업기업”이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재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예비재창업자”란 재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이하생략-

참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3. 2. 7.>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

-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2. 23.>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2. 23.>

참조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참조 5 창업기업 인정 기준

총사업자등록내역 확인결과 ①업력 기준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개인·법인)를 소지하고 있거나 ②폐업 또는 기타 변동 이력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창업기업 인정 기준표>					
신청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업력 인정기준	
공고일 기준 창업 7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					
개인 기업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를 받아	동종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아님	-	
		이종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 업	이종 개인사업자 개시일	
	다른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며	신규로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아님	가장 빠른 개인사업자 창업일
		이종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종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 업	이종 개인사업자 개시일
	동종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 개인사업자 개시일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동종 개인사업자 개시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			
기존 법인사업자를 유지 또는 폐업한 뒤	신규로 개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 업	개인사업자 개시일	
법인 기업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한 뒤	이종 법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 업	이종 법인사업자 개시일
		동종 법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 3년 초과	창 업	동종 법인사업자 개시일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동종 법인사업자 개시일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		
	동종 법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양수이전 동일대표의 개인사업자 개시일	
	기존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며	이종 법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 업	이종 법인사업자 개시일
		동종 법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동종 법인사업자 개시일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
조직변경을 할 때	동종을 유지한 경우		창업아님	-	
	이종으로 변경한 경우		창 업	변경일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한 뒤	신규로 법인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 업	신규 법인사업자 개시일	

참조 6 창업기업 제재조항

제재 및 환수(지급불가)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input type="checkbox"/>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5년	전액 환수(미지급)	-
<input type="checkbox"/>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물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3년		
<input type="checkbox"/>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 자료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가능			일시중단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규제 중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 환수(미지급)	-
○ 고의성이 없는 경우		잔액 환수(미지급)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1년	전액 환수(미지급)	-
<input type="checkbox"/> 현물을 허위로 대응한 경우	3년	전액 환수(미지급)	
<input type="checkbox"/> 진흥원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제재
<input type="checkbox"/>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미지급)	-
<input type="checkbox"/>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 환수(미지급)	-
○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휴·폐업한 경우		잔액 환수(미지급)	-
○ 질병 등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중단·포기·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고
<input type="checkbox"/>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상 지체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진흥원의 서류제출 및 프로그램 참석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내 사업비의 복원 요청에 2주 이상 불응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진흥원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창업기업 대표자가 2주 이상 연락 두절인 경우			주의
<input type="checkbox"/>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지원금을 핵심수행과제 해결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반납(불인정) 및 적정용도로 집행가능	개선요청
○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		해당금액 환수(미지급)	개선요청

* 협약기간 내 제재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단', 협약기간 종료 후 제재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패' 처리
 * 창업기업 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주의 2회 = 경고 1회(협약기한 내)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7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
 * 사업비 사후정산 사업의 경우, 지급 이전 제재사항 발생시 전액환수 사항은 전액 미지급으로 처리하며, 잔액 환수 사항은 제재사항 발생시점 이전 사용금액만 인정됨.
 * 단, 참여 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거나 진흥원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항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참조 7 수원대학교 시제품 제작 장비

NO	제품	모델명	보유갯수
1	3D프린터(보급형)	3DP-110F	5
2	3D프린터(산업용)	FORTUS 250mc	1
3	레이저커팅기	VLS-6.60(유니버설)	1
4	3D프린터(보급형)	Makerbot Replicator PLUS	10
5	3D프린터(산업용)	MJP 2500PLUS	1
6	3D프린터(대형)	M400	1
7	3D프린터(대형)	M400	1
8	다관절 탭핑머신	VAT-1408	1
9	샌드블라스터	로즈비1	2
10	소형분쇄기	S-2	1
11	소형사출기	MD-25	1
12	수직형머시닝센터 (MCT-5호기)	VM5400(두산)	1
13	수직형머시닝센터 (MCT-4호기)	DNM4500(두산)	1
14	용접기	MIG-205PRO	1
15	콘타머신	VS-400	1
16	석정반		2
17	용접부스	KWC-ROOM	1
18	틀링함	VM5400 TTS-SM42A	1
19	틀링함	DNM4500 TTS-SM42A	1
20	CNC밀링머신 (3축)	Tiny CNC-P6060C ATC	1
21	CNC밀링머신 (5축)	TinyCNC-P6060C 5AXIS	1
22	레이저마킹기	SFLM-30W	1
23	레이저커팅기	SPEEDY 400 60W(트로텍)	1
24	아크릴 절곡기	M12-1200mm	2
25	열프레스기(컵)	2구컵프레스 ST-210	3
26	열프레스기(평판)	HP3805B	2
27	레이저커팅기 집진기	Air Cleaner BLUE	2
28	각도절단기	FMS254-0	1
29	고진공 흡착 대면적 고속가공기	RXR2450(렉슨)	1
30	밴드쏘	WS-14	1
31	벨트샌더기	HS950	1
32	수압대패기	A3 41 A	1
33	자동대패기	PX16	1
34	스크롤쇼	JWSS-22B	1
35	슬라이딩테이블쏘	K3 WINNER 아웃트리거형	1

NO	제품	모델명	보유갯수
36	쏘스탑-루터기-세트	PC1075	1
37	탁상 드릴링 머신	YSTM-19-삼상380V	2
38	테이블쏘	M18 FTS210-0	1
39	사이클론집진기	CIFLUX 2	1
40	습식그라인터/테이블베이스		1
41	도미노 패스툴	DF 500-Q-PLUS	1
42	트리거 클램프셋트	-	1
43	컴퓨터자수기	PR680W	1
44	밀워키 전동공구		1
45	실사출력기	HP Latex 700W - 64인치	1
46	컷팅 플로터	CE7000-130	1